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나.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0)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제2호 중 “경우에 실시하며,”를 “경우 및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검사 항목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이하 “도료 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의10을 제11조의11로 하고, 제1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의 위반 어린이용품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의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말한다.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의 어린이
용품 자발적 회수 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④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의 외국에
서의 용품 회수 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의14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1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위반 어린이용품 보고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상 용품 정보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모델명
	제조량	제조기간
	수입량	수입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위반 사유

위반 사항

향후 조치 계획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위반 어린이용품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상 용품 정보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모델명
	제조량	제조기간
	수입량	수입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위반 사항		
회수 등의 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회수 등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조치대상 정보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모델명
	제조량	제조기간
	수입량	수입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조치결과	조치량	미조치량
	회수 등의 실적 내용	
	회수 등을 하지 못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제3항에 따라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외국에서의 용품 회수 등에 따른 조치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상 용품 정보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모델명
	제조량	제조기간
	수입량	수입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보고 유형	1. 외국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3. 다른 관련 사업자가 1호 또는 2호의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용품의 위해성		
회수 등의 내용과 실적		
회수 등을 하지 못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어린이
용품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생략)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밀검사: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u>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u>	2. ----- ----- ----- -- <u>경우 및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검사 항목의 경우</u> -----.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u>	⑤ 법 제2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이하 “도료 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활동 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증축·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⑥ (생략)

<신설>

를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의 위반 어린이용품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의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를 말한다.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

<u>제11조의10</u> (생략)	<u>의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u> <u>④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 의 외국에서의 용품 회수 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u> <u>제11조의11</u> (현행 제11조의10과 같음)
----------------------------	--